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58
----------	-----

2024. 4. 25.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4. 12. 구청장(자원순환과)

나. 상정의결

- 제31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2024. 4. 25.)
“ 수정가결 ”

2. 제안이유(제안설명 :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방법을 규정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 기금설치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의 규정에 따라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산정방법 개정(안 제5조~제8조)
- 나. 기금의 존속기한 규정 삭제(안 제12조)

4.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⑤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택지 등을 개발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내야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의 산정방법은 별표1과 같다.
-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감사담당관, 가족정책과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2) 입법예고(2024. 3. 8. ~ 2024. 3. 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분석평가 완료)

5. 검토의견(전문위원 : 이문성)

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산정방법 개정(안 제5조)

현 행	개 정 안
제5조(납부금액의 산정) <u>사업시행자의 납부 금액은 시설의 부지 매입에 필요한 비용과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u>	제5조(납부금액의 산정) ① <u>사업시행자의 납부금액은 시행령 제4조제5항을 따른다.</u>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법」 제6조제2항및제3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납부금’)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 ※ 기초자치단체장은 납부금을 해당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법 제6조제3항)
- 법 시행령은 제4조제5항에서 납부금의 산정방법을 별표로 상세히 명시하고 있는 바, 집행부를 납부금액의 산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개정안을 제출하였음.
- 검토하건데 2020년 3월 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서 납부금액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조례에 위임되어 있었으나, 2020년 3월부터는 법 시행령에서 통일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개정안은 현행 법 시행령(제4조4항)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 ※ 위와 같은 취지에 따라 현행 조례의 납부금액 산정을 명시한 제6조(시설부지 매입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과 제7조(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금번 개정안에 포함되었음.(안 제6조 및 안 제7조 각각 삭제)
- 2020년 3월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납부금액 산정에 관한 사항은 자치사무가 아닌 기관위임사무의 성격을 가지는 바, 기관위임사무의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납부금 의무자의 법적 해석 혼선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사료됨.

나. 폐기물 처리 시설 변동계수 조항 신설(안 제5조제2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5조(납부금액의 산정) (본문 생략) <p style="text-align: right;"><u><항 신설></u></p>	제5조(납부금액의 산정) ① (생략) <p style="text-align: center;"><u>② 제1항에 따른 월 최대 변동계수는 1.2 이상을 적용한다.</u></p>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산정방법을 명시한 「법 시행령」 제 4조제5항은 그 구체적 내용을 별표1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 별표1에서는 ‘해당 지역의 월별 폐기물 발생 현황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장은 1.3 미만의 범위에서 정하는 변동계수를 시설 설치비 산정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집행부는 위와 같이 월 최대 변동계수를 ‘1.2이상’으로 개정하고 있는 바, 월 최대 변동계수에 관한 시행령 별표1의 내용을 감안할 때 개정하고자 하는 월 최대 변동계수는 1.2이상에서 1.3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조례의 완성도를 고려하면 조례 자체에서 월 최대 변동계수를 명확히 명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집행부는 안제5조제2항의 개정안 중 월 최대 변동계수를 ‘1.2이상’에서 ‘1.2’로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다. 납부금액 산정의 기준일 신설(안 제5조제3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5조(납부금액의 산정) (본문 생략) <p style="text-align: right;"><u><항 신설></u></p>	제5조(납부금액의 산정) ①~②(생략) ③ 제1항에 따른 톤당 설치단가는 <u>납부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연도에 완공 또는 완공 예정인 수도권 지역 시설의 톤당 평균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하되, 납부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연도에 완공 또는 완공 예정 시설이 없을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설치된 시설 중 최근 연도에 완공된 2개 시설의 평균 톤당 설치비용을 적용한다.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설치된 시설이 없을 경우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표준단가를 적용한다.</u>

- 법 시행령은 별표1에서 납부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무게단위인 톤(ton) 당 시설용량과 소요면적 등을 기준으로 시설부지면적과 부지매입단가를 산출하여 시설부지매입비를 계산하고, 마찬가지로 톤(ton)을 기준으로 시설 설치비를 산정하여 최종 납부금액을 산출함.(법 시행령 제4조제5항 관련 별표1)

- 그러나 집행부가 납부금액을 실제로 산정함에 있어서 산출 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이 법 시행령에 마련되어 있지 않은 바, 이로 인해 민원인들과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집행부는 납부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납부계획서 제출일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명시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고자 위와 같이 개정안을 제출하였음.
- 검토하건데 법과 법 시행령의 문언과 취지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납부금 산정에 대한 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법 시행령이 입법상의 과실로 명시하지 못한 ‘납부금액 산정의 기준일’을 명시한 금번 개정안은 입법의 불비를 해소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보임.

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존속기한 조항 삭제(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p>제12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u>〈삭제〉</u></p>

- 현행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음.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된 것인 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조례상 기금의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안인 바,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제31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2024. 4. 25.)

- 질 의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에 관한 시행령에 근거하여 택지개발을 하였으나 폐기물처리시설을 구축하지 못해 자치구에 교부한 시설기금 집행 대상은 어떻게 되나
- 답 변 : 규정으로 대상 지역을 특정하지는 않고 있으나 환경자원센터가 있어 세곡·수서 지역에 집행하고 있으며, 자원센터 신설과 개수에 집행하였음

7. 토론 요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에 관한 시행령에 근거하여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 납부하는 기금의 월 최대변동계수를 법령 규정 “1.2 이상 1.3미만”에 따라 “1.2 이상”으로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1.2”로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안이 제출됨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발의일자 : 2024. 4. 25.

제358호

제 안 자 : 복지도시위원장

1. 수정이유

- 월 최대 변동계수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적용 기준을 수정함

2. 수정내용

- 월 최대 변동계수의 기준을 정수 “1.2”로 수정함(안 제5조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2항 중 “1.2 이상을”을 “1.2를”로 한다.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5조(납부금액의 산정) <u>사업시행자의 납부금액은 시설의 부지 매입에 필요한 비용과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u></p> <p><신 설></p> <p><신 설></p>	<p>제5조(납부금액의 산정) ① <u>사업시행자의 납부금액은 시행령 제4조 제5항을 따른다.</u></p> <p>② <u>제1항에 따른 월 최대 변동계수는 1.2 이상을 적용한다.</u></p> <p>③ <u>제1항에 따른 톤당 설치단가는 납부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연도에 완공 또는 완공 예정인 수도권 지역 시설의 톤당 평균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하되, 납부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연도에 완공 또는 완공 예정 시설이 없을 경</u></p>	<p>(개정안과 같음)</p> <p>② <u>제1항에 따른 월 최대 변동계수는 1.2를 적용한다.</u></p> <p>(개정안과 같음)</p>

제6조(시설부지 매입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① 납부금액의 시설부지 매입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에 있어 시설규모 및 시설부지에 필요한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소각시설의 규모 :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계획목표연도의 1일 발생이

우 최근 5년 이내에 설치된 시설 중 최근 연도에 완공된 2개 시설의 평균 톤당 설치비용을 적용한다.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설치된 시설이 없을 경우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표준단가를 적용한다.

<삭 제>

(개정안과 같음)

예상되는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
물 처리시설에서 처리 할 예정
인 유기성폐기물량을 제외한
폐기물 전량에 계획 월 최대변
동계수를 곱한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한다. 이 경우
계획 월 최대변동계수는 1.3
이상을 적용한다.

2. 퇴비화·사료화시설의 규모 :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
에서 계획목표연도의 1일 발생
이 예상되는 폐기물 중 분리 배
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
물의 전량에 계획 월 최대변동
계수를 곱한 양을 처리할 수 있

는 용량을 말한다. 이 경우 계획 월 최대변동계수는 1.3 이상을 적용한다.

3. 폐기물소각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면적 :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규모에 소각시설 1톤당 필요한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 (다만, “소각시설 1톤당 필요한 부지면적”이라 함은 가연성폐기물 1톤을 소각처리 하는데 필요한 부지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1톤당 20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한다.)

4. 퇴비화·사료화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면적 : 제2호에 따라 산정된 규모에 퇴비화·

사료화시설 1톤당 필요한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다만, “퇴비화·사료화시설 1톤당 필요한 부지면적” 이라 함은 음식물 등 유기성 폐기물 1톤을 퇴비화·사료화 하는데 필요한 부지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1톤당 7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부지에 필요한 면적에 대한 부지 매입비용은 다음 각 호 기준에 따른다.

1. 이미 확보한 부지의 경우는 필요한 면적에 대한 감정평가금액

2. 부지 매입이 진행 중인 경우

는 매입에 필요한 실제비용

3.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택지개발사업지구 조성원가에

필요한 면적을 곱한 금액

③ 시설부지의 매입에 필요한 비

용의 산정 : 제1항제3호와 제4호

에 따라 산정된 각 시설 부지면

적에 제2항 각 호의 부지 매입단

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 감정평가 등 비용 산정에 필

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 부담으

로 한다.

제7조(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① 납부금액의 시설 설치

에 필요한 비용은 건설비와 「환

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삭 제>

(개정안과 같음)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를 포함한
다.

② 소각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의 톤당 설치비용 산정방법
은 납부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년
도에 완공 또는 완공 예정인 수
도권 지역 시설의 톤당 평균 설
치비용을 기준으로 하되, 납부계
획서 제출일이 속한 년도에 완공
또는 완공예정 시설이 없을 경우
최근 5년 이내 설치된 시설 중
최근 년도에 완공된 2개 시설의
평균 톤당 설치비용을 적용한다.
다만, 최근 5년 이내 설치된 시
설이 없을 경우 환경부 폐기물처
리시설 설치비용 표준단가를 적

용한다.

③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 제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산정된 각 시설의 규모에 제2항에서 산정한 톤당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납부금액의 부과 등) ① 제4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제6조 및 제7조 규정 등에 따라 납부금액을 산출하여 납부기한을 고지일로부터 15일로 하여 부과한다.

②·③ (생략)

제12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제8조(납부금액의 부과 등) ① 제4조 (개정안과 같음)

에 따라-----

----- 제5조 -----

-----.

②·③ (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준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준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준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사업시행자의 납부금액은 시행령 제4조제5항을 따른다.
- ② 제1항에 따른 월 최대 변동계수는 1.2를 적용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톤당 설치단가는 납부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연도에 완공 또는 완공 예정인 수도권 지역 시설의 톤당 평균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하되, 납부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연도에 완공 또는 완공 예정 시설이 없을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설치된 시설 중 최근 연도에 완공된 2개 시설의 평균 톤당 설치비용을 적용한다.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설치된 시설이 없을 경우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표준단가를 적용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제4조 규정에 따라”를 “제4조에 따라”로 하고, “제6조 및 제7조 규정 등”을 “제5조”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납부금액의 산정) <u>사업시행자의 납부금액은 시설의 부지 매입에 필요한 비용과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u></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5조(납부금액의 산정) ① <u>사업시행자의 납부금액은 시행령 제4조제5항을 따른다.</u></p> <p>② <u>제1항에 따른 월 최대 변동계수는 1.2를 적용한다.</u></p> <p>③ <u>제1항에 따른 톤당 설치단가는 납부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연도에 완공 또는 완공 예정인 수도권 지역 시설의 톤당 평균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하되, 납부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연도에 완공 또는 완공 예정 시설이 없을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설치된 시설 중 최근 연도에 완공된 2개 시설의 평균 톤당 설치비용을 적용한다.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설치된 시설이 없을 경우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표준단가를 적용한다.</u></p> <p><u><삭 제></u></p>
<p>제6조(시설부지 매입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① <u>납부금액의 시설부지 매입에 필요한 비용의 산</u></p>	

정에 있어 시설규모 및 시설부
지에 필요한 면적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폐기물소각시설의 규모 : 해
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
서 계획목표연도의 1일 발생
이 예상되는 재활용되지 아니
하는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
류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
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제외한 폐기물 전량에 계획
월 최대변동계수를 곱한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한
다. 이 경우 계획 월 최대변동
계수는 1.3 이상을 적용한다.

2. 퇴비화·사료화시설의 규모
: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
지에서 계획목표연도의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 중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
기성폐기물의 전량에 계획 월
최대변동계수를 곱한 양을 처
리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한다.
이 경우 계획 월 최대변동계
수는 1.3 이상을 적용한다.

3. 폐기물소각시설의 설치에 필

요한 부지면적 :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규모에 소각시설 1톤당 필요한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다만, “소각시설 1톤당 필요한 부지면적” 이라 함은 가연성폐기물 1톤을 소각처리 하는데 필요한 부지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1톤당 20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한다.)

4. 퇴비화·사료화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면적 : 제2호에 따라 산정된 규모에 퇴비화·사료화시설 1톤당 필요한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다만, “퇴비화·사료화시설 1톤당 필요한 부지면적” 이라 함은 음식물 등 유기성 폐기물 1톤을 퇴비화·사료화 하는데 필요한 부지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1톤당 7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부지에 필요한 면적에 대한 부지 매입비용은 다음 각 호 기준에 따른다.

1. 이미 확보한 부지의 경우는

필요한 면적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

2. 부지 매입이 진행 중인 경우
는 매입에 필요한 실제비용

3.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는 택지개발사업지구 조성원
가에 필요한 면적을 곱한 금
액

③ 시설부지의 매입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 제1항제3호와 제
4호에 따라 산정된 각 시설 부
지면적에 제2항 각 호의 부지
매입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
다.

④ 감정평가 등 비용 산정에 필
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 부담으
로 한다.

제7조(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① 납부금액의 시설 설치
에 필요한 비용은 건설비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를 포
함한다.

② 소각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의 톤당 설치비용 산정방법
은 납부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삭 제>

년도에 완공 또는 완공 예정인 수도권 지역 시설의 톤당 평균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하되, 납부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년도에 완공 또는 완공예정 시설이 없을 경우 최근 5년 이내 설치된 시설 중 최근 년도에 완공된 2개 시설의 평균 톤당 설치비용을 적용한다. 다만, 최근 5년 이내 설치된 시설이 없을 경우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표준단가를 적용한다.

③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 제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산정된 각 시설의 규모에 제2항에서 산정한 톤당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납부금액의 부과 등) ① 제4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제6조 및 제7조 규정 등에 따라 납부금액을 산출하여 납부기한을 고지일로부터 15일로 하여 부과한다.

②·③ (생략)

제8조(납부금액의 부과 등) ① 제4조에 따라 -----

----- 제5조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
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
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삭 제>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58
----------	-----

제출연월일: 2024. 4. 12.
제출자: 강남구청장
제출부서: 자원순환과

1. 제안이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방법을 규정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 기금설치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의 규정에 따라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산정방법 개정(안 제5조~제8조)
- 나. 기금의 존속기한 규정 삭제(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 ⑤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택지 등을 개발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내야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의 산정방법은 별표1과 같다.
-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감사담당관, 가족정책과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2) 입법예고(2024. 3. 8. ~ 2024. 3. 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분석평가 완료)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사업시행자의 납부금액은 시행령 제4조제5항을 따른다.
- ② 제1항에 따른 월 최대 변동계수는 1.2 이상을 적용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톤당 설치단가는 납부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연도에 완공 또는 완공 예정인 수도권 지역 시설의 톤당 평균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하되, 납부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연도에 완공 또는 완공 예정 시설이 없을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설치된 시설 중 최근 연도에 완공된 2개 시설의 평균 톤당 설치비용을 적용한다.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설치된 시설이 없을 경우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표준단가를 적용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제4조 규정에 따라”를 “제4조에 따라”로 하고, “제6조 및 제7조 규정 등”을 “제5조”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납부금액의 산정) <u>사업시행자의 납부금액은 시설의 부지 매입에 필요한 비용과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u></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5조(납부금액의 산정) ① <u>사업시행자의 납부금액은 시행령 제4조제5항을 따른다.</u></p> <p>② <u>제1항에 따른 월 최대 변동계수는 1.2 이상을 적용한다.</u></p> <p>③ <u>제1항에 따른 톤당 설치단가는 납부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연도에 완공 또는 완공 예정인 수도권 지역 시설의 톤당 평균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하되, 납부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연도에 완공 또는 완공 예정 시설이 없을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설치된 시설 중 최근 연도에 완공된 2개 시설의 평균 톤당 설치비용을 적용한다.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설치된 시설이 없을 경우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표준단가를 적용한다.</u></p> <p><u><삭 제></u></p>
<p>제6조(시설부지 매입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① <u>납부금액의 시설부지 매입에 필요한 비용의 산</u></p>	

정에 있어 시설규모 및 시설부
지에 필요한 면적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폐기물소각시설의 규모 : 해
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
서 계획목표연도의 1일 발생
이 예상되는 재활용되지 아니
하는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
류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
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제외한 폐기물 전량에 계획
월 최대변동계수를 곱한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한
다. 이 경우 계획 월 최대변동
계수는 1.3 이상을 적용한다.

2. 퇴비화·사료화시설의 규모
: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
지에서 계획목표연도의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 중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
기성폐기물의 전량에 계획 월
최대변동계수를 곱한 양을 처
리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한다.
이 경우 계획 월 최대변동계
수는 1.3 이상을 적용한다.

3. 폐기물소각시설의 설치에 필

요한 부지면적 :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규모에 소각시설 1톤당 필요한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다만, “소각시설 1톤당 필요한 부지면적” 이라 함은 가연성폐기물 1톤을 소각처리 하는데 필요한 부지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1톤당 20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한다.)

4. 퇴비화·사료화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면적 : 제2호에 따라 산정된 규모에 퇴비화·사료화시설 1톤당 필요한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다만, “퇴비화·사료화시설 1톤당 필요한 부지면적” 이라 함은 음식물 등 유기성 폐기물 1톤을 퇴비화·사료화 하는데 필요한 부지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1톤당 7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부지에 필요한 면적에 대한 부지 매입비용은 다음 각 호 기준에 따른다.

1. 이미 확보한 부지의 경우는

필요한 면적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

2. 부지 매입이 진행 중인 경우
는 매입에 필요한 실제비용

3.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는 택지개발사업지구 조성원
가에 필요한 면적을 곱한 금
액

③ 시설부지의 매입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 제1항제3호와 제
4호에 따라 산정된 각 시설 부
지면적에 제2항 각 호의 부지
매입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
다.

④ 감정평가 등 비용 산정에 필
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 부담으
로 한다.

제7조(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① 납부금액의 시설 설치
에 필요한 비용은 건설비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를 포
함한다.

② 소각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의 톤당 설치비용 산정방법
은 납부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삭 제>

년도에 완공 또는 완공 예정인 수도권 지역 시설의 톤당 평균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하되, 납부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년도에 완공 또는 완공예정 시설이 없을 경우 최근 5년 이내 설치된 시설 중 최근 년도에 완공된 2개 시설의 평균 톤당 설치비용을 적용한다. 다만, 최근 5년 이내 설치된 시설이 없을 경우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표준단가를 적용한다.

③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 제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산정된 각 시설의 규모에 제2항에서 산정한 톤당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납부금액의 부과 등) ① 제4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제6조 및 제7조 규정 등에 따라 납부금액을 산출하여 납부기한을 고지일로부터 15일로 하여 부과한다.

②·③ (생략)

제8조(납부금액의 부과 등) ① 제4조에 따라-----

----- 제5조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
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
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삭 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인한 규칙 개정으로 비용발생 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기술적으로 비용 추계가 어려움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미발생

4. 작성자

- 자원순환과 행정8급 박지은(02-3423-5975)